설 계 설 명 서

1. 목 적(위치 및 현황)

• 본 용역은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2구역)으로써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도 로 제 설 : 1식

• 임 차 수 량 : 30대

- 덤프트럭(15톤) 16대, 덤프트럭(5톤) 5대, 트럭(1톤) 5대, 굴삭기(0.8㎥) 3대, 염수살수차(16톤) 1대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별 첨 내 역 참 조				

4. 시행방법

• 도급시행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15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과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역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2구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 사항은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분당구청을 말하며, "도급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라. 본 시방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현장감독을 말한다.

감독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본 용역 일체는 계약서, 설계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 설계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하고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2.1 도급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 설계서, 작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2 도급자의 책임

가. 도급자의 책임범위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작업사항 일지라도,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 될 수 없다.

나.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및 손해보상책임

1) "도급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중 발생한 인사사고 및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3 용역관리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나. 본 용역은 본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 시험이 필요한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 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라.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마. 본 용역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 환경, 품질관리자)는 착수신고 전 발주청의 과업수행 교육을 받은 후 살사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약 및 해지

가. "도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서면통보로서 즉시 계약의 해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기타 "도급자"의 계속적인 과업수행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판단될 때

나. "발주청"은 전항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자"에 대하여 서면 통고로서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 될 경우

2) 도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과업을 거부 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를 미 이행하여 3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4. 기록관리

가. 작업수행기록

도급자는 본 용역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과업 완료시에는 3일이내에 시공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사진, 과업세부내역(사진대지) 상의 공정사진

1)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각 공정별로 작업사항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수시로 촬영(원경, 근경)하여야 한다.

2) 과업물량 정산 또는 설계변경 시 "도급자"의 과업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미 반영한다.

다. 준공사진 및 파일 제출

각 과업별 현장별 사진 및 과업세부내역(사진대지)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특 별 시 방 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용역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용역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의무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내역과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작업지시 준수

본 용역의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의 유선이나 작업지시서에 의거 지시 받았을 시에는 당일 현장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하게 용역이 지연 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다. 정당한 감독관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경고조치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상기 "일반시방서 3. 계약의 해약 및 해지"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은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른 발주청의 과업지시 또는 기상에 따라 과업 물량이 정해지며, 용역기간 내에 물량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도급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현장대리인 현장 이탈금지

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하거나 타인(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토록 할 경우에는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 처분한다.

6. 가설물 및 안내판

과업 시 안내판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용역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8. 중기관리

본 용역에 필요한 주요 장비는 감독관의 검사 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중기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9.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작업 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용역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붙임참조)

- 4개분야(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역할 및 책임, 재해발생 수준)에 대한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10.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

11. 발생품 처리

용역 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성 남 시 분 당 구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2구역)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제설작업(백호)												
제설작업(주간)	0.8㎥, 대당	일	45.0									
제설작업(야간)	0.8㎥, 대당	일	45.0									
2. 제설작업(살수차)												
제설작업(주간)	16톤, 대당	일	15.0									
제설작업(야간)	16톤, 대당	일	15.0									
3. 제설작업(15톤트럭삽날)	16대, 4개월	대, 개월	64.0									
4. 제설작업(5톤트럭삽날)	5대, 4개월	대, 개월	20.0									
5. 제설작업(1톤트럭)	5대, 4개월	대, 개월	20.0									